

「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」

제 안 설 명

□ 의안번호 제2375호

「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○ 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조례의 상이한 부분을 일치시키고 통합방위협의회 세부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.

○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명칭 중

「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」가 2021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어 이에 맞게 “서울지방경찰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경찰청장”으로 변경하고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서울지방 국세청장과 서울지방우정청장을 삭제하였으며

- 통합방위회의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화상회의 방법을 추가하고, 제3조제3항제17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2년, 두 차례 연임으로 구체화하였고
- 그 위촉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, 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 관련 항목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,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-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2021. 6. 22.

비상기획관 갈 준 선